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7,473,000	12,824,190
일반회계	390,225,000	11,706,750
특별회계	37,248,000	1,117,440
기타특별회계	37,248,000	1,117,4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15,950	198,479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595,000	287,85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62,515	22,875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47,805	16,434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054,000	31,62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78,460	20,354
치수사업특별회계	7,549,270	226,47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680,000	170,4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4,765,000	142,9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19,467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